

예 산 총 칙

2009년도 추경 1회

제 1 조 200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15,944,983	9,478,349
일반회계	286,088,504	8,582,655
특별회계	29,856,479	895,694
기타특별회계	29,856,479	895,694
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	1,028,722	30,862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	1,437,798	43,134
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	334,862	10,046
주택사업특별회계	97,781	2,933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11,510,927	345,328
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	488,078	14,642
치수사업특별회계	1,360,437	40,813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	431,515	12,945
기반시설특별회계	211,359	6,341
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	12,955,000	388,65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2009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"사고이월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308,318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